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
----------	-----

발의연월일 : 2016. 6. 14.

발의자 : 안상수 · 정유섭 · 장병완
유성엽 · 박준영 · 박찬우
성일종 · 이학재 · 김석기
조훈현 · 신동근 · 황영철
박남춘 · 홍일표 · 김순례
의원(15인)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 5도서는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 수호, 접속수역 및 EEZ 관리 그리고, 영토(영해)의 최외곽지역으로 국내 · 외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의료 · 교통 등 불리한 여건에 의해 재정자립도, GRDP, 주민의 생활환경 수준 등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안보관광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높은 해상교통비 부담으로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여 서해 5도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나.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제4항 신설).

다.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해 5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 신설) .

라.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이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주민의 정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에 따라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운항 포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항되어 안정적인 주민 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마. 서해 5도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처리를 위한 육지체류비용과 높은 설계비 및 행정비용 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행위 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단, 실 거주목적일

확률이 높고, 토지형질변경규모가 적은 100m² 이하 소규모 주택에
한함)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노력
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 제20
조 및 제21조 신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를 “어구손괴와 조업손실,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통제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서해 5도 지역은 신규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불법조업방지시설)”을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어로 한계선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어업인의 어로활동상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필

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여객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건축인 · 허가 간소화) 서해 5도서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불법조업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수산자원조성 및 어업활동지원)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어로한계선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어업인의 어로활동상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여객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건축 인·허가 간소화)

서해 5도서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